

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

검 토 보 고

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「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임.

1. 제정이유

-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,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 수립(안 제4조)
- 공공기관 등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등(안 제5조)
- 음수대의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(안 제6조)
- 수돗물 음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(안 제9조)

3. 검토의견

- 공공기관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휴대용 물병을 보급하여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고,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
-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,

- 동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현재 조례를 운영 중이며, 도내 각 시·군에 각종 회의나 행사시 가능한 병입수 사용을 줄이고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협조 공문(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-12366호(2017. 7. 26.))이 접수되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사항임.
- 안 제5조(공공기관 등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등)에서 “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”고 정하고 있는데, 안산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결과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의 단서에서 “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고
- “주민”이란 조례의 “적용대상자” 뿐만 아니라 “제3자” 등을 포괄 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여 적용됨에 따라 “일회용 병입수의 제조 업자” 및 “그 판매업자”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의 단서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함.
- 또한, 안 제5조의 적용대상이 “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”와 “그 밖에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중 공공기관의 장이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정한 행사 및 회의”로 정하고 있는데, 조례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동 조례안은 시민의 “환경권” 보장을 위하여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일회용 병입수 사용의 제한을 권장하는 조례 이므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의 단서 중 “주민”의 범위에 “적용대상자” 뿐만 아니라 “제3자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와 조례안 제5조의 내용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항인지 대하여는 정확한 법적 해석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참고자료

- 관련법령 등 1부.